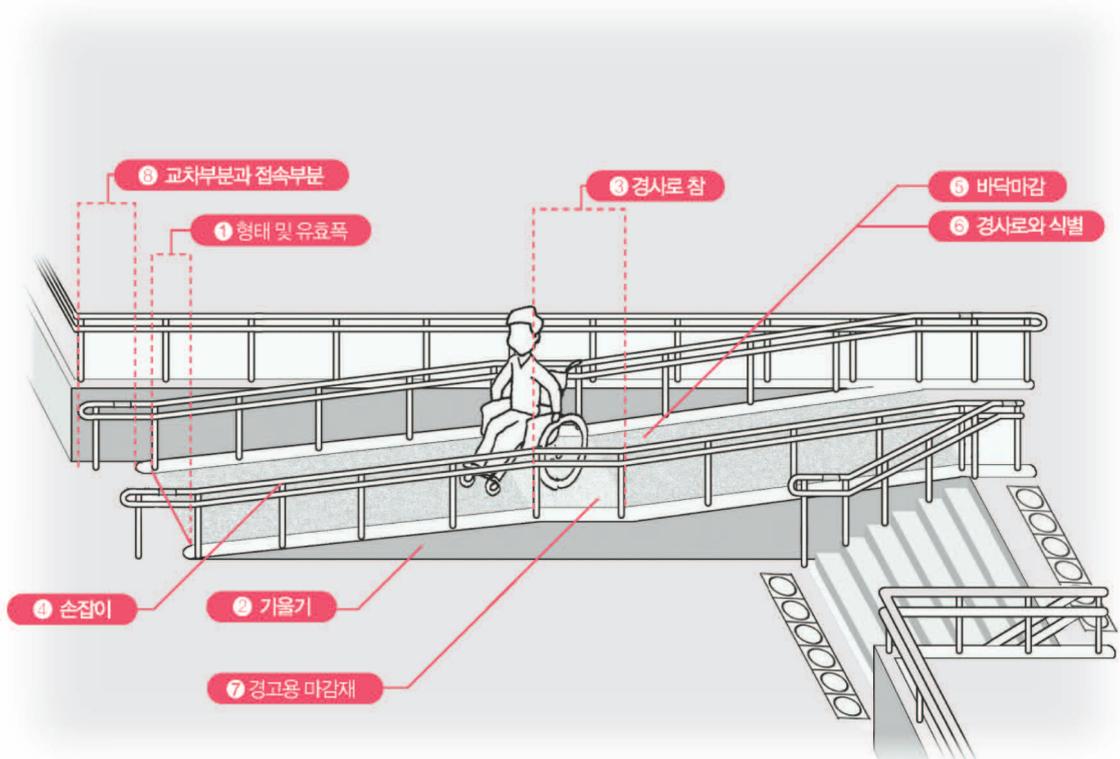


6. 경사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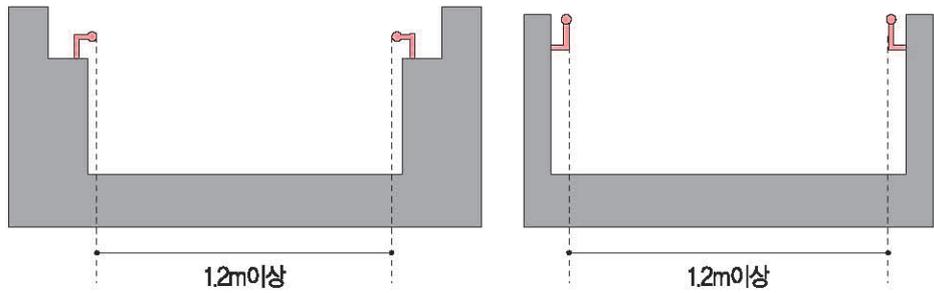


- **설치원칙** 경사로는 휠체어가 복도의 높이 차이를 극복하기에 매우 좋은 대안이다. 따라서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에 적합한 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.
- **설치요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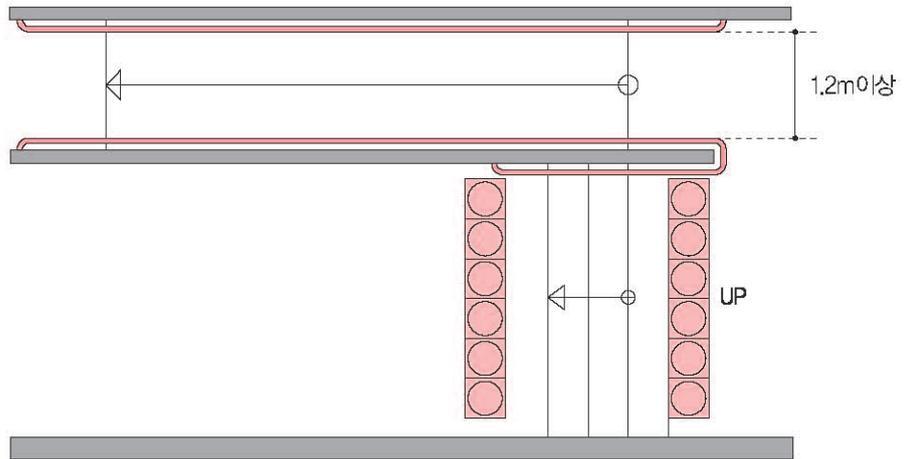
 -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에 적합한 위치와 기울기, 폭, 바닥의 마감상태, 경사로 참, 손잡이 등에 대한 면밀한 배려가 필요하다.
 -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를 위하여 경사로만 설치하는 것 보다는 계단을 병행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 - 경사로를 대피로로 사용하기에는 배연시설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별도의 피난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) 형태 및 유효폭

- 모든 이용자의 안전한 수직 이동을 위하여 경사로는 직선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경사로의 최소 유효폭은 복도와 동일하며, 1.2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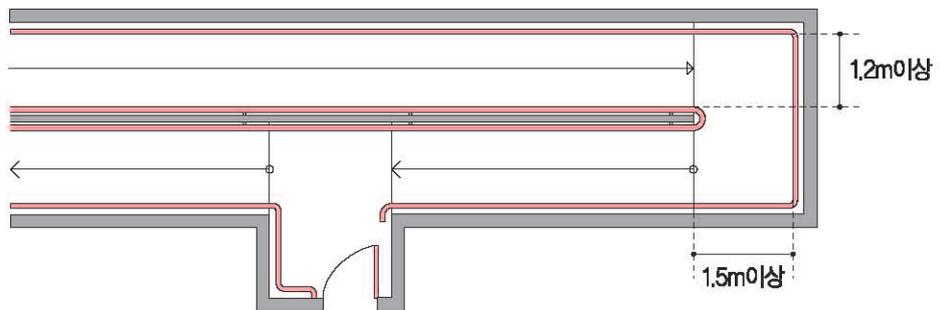


〈유효폭 측정 범위〉



〈계단과 병설된 경우〉

- 시작과 끝지점, 방향전환지점은 1.5m 이상의 활동공간이 있어야 한다.
-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층간이동을 위하여 경사로와 계단을 병행 설치하는 것이 좋다.



〈계단 또는 다른 이동로가 없는 경우〉

2) 기울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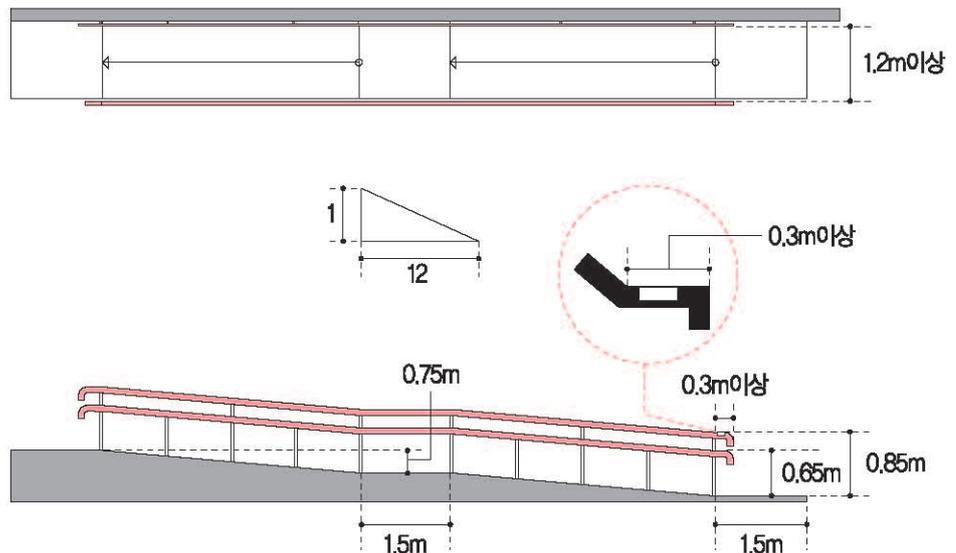
- 경사로의 기울기는 1/12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.
-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1/8까지 완화할 수 있다.
 - ①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
 - ② 높이 1m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/12 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
 - ③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
- 1/12~1/18의 범위를 초과하는 완만한 중간 이동 경사로는 오히려 이동거리를 길게 하여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.

3) 경사로 참

- 방향을 전환하여야 하는 지점의 경사로 참은 반드시 수평면이어야 하며, 1.5m×1.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.75m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경사도가 직선인 경우에는 참의 활동공간 폭은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.

4) 손잡이

- 경사로 길이가 1.8m 이상 또는 바닥면의 높이차이가 0.15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한다.
-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는 0.3m 이상의 수평 손잡이를 연장하여 설치한다.
-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.85m±5cm 이내로 하고, 손잡이의 지름은 3.2cm~3.8cm 이내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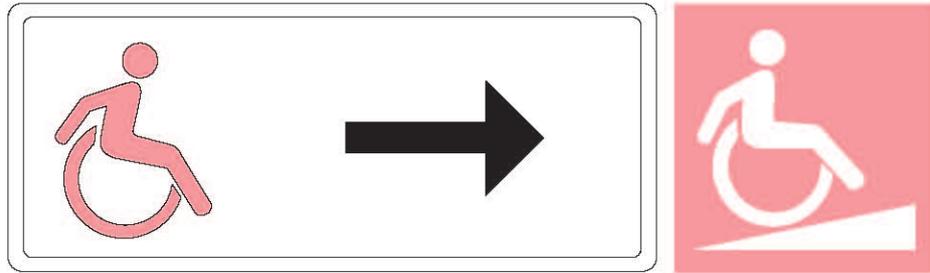


5) 바닥마감

-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.
- 휠체어가 아래로 미끄러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고,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경사로 중심에서 좌우 45° 방향으로 줄눈이 가도록 마감하거나 엇갈린 무늬가 되도록 한다.
- 양측면에는 높이 5cm 이상의 휠체어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한다.
- 휠체어의 벽면 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.

6) 경사로의 식별

- 약시자, 노인, 어린이 등이 경사로 시작과 끝지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마감재의 색상, 질감 등의 차이를 둔다.
- 경사로의 위치를 유도, 안내하는 표시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


〈경사로 유도 안내표시〉

〈경사로 표시〉

7) 경고용 마감재

- 휠체어 사용자는 경사로로, 시각장애인은 계단으로 분리하여 유도하고 유효폭 1.5m 이하 경사로에 시각장애인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.
- 경사로 이외의 접근로가 없어 시각장애인의 유도가 불가피한 경우 경사로의 시작과 끝지점, 휴식 참 등에는 경고용 바닥마감재를 0.3m 이상 설치하되 걸려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한다.

8) 교차부분과
접속부분

- 휠체어가 회전하거나 교행하는 교차, 접속부분에는 1.5m×1.5m의 수평면이 확보되어야 한다.

